

수원지방법원 2016. 5. 25 선고 2015나22288(본소), 2015나22295(반소) 판결

[계약금반환청구의 소 · 매매대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스노우라인

변론 종결 2016. 5. 4.

판결 선고 2016. 5. 25.

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. 6. 10. 선고 2014가단46346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(반소피고)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(반소피고)가, 반소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11,2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 : 원고는 피고에게 3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가. 본소 :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1,29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5. 7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 :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2. 5. 21. 독일 Fendt사에 SAPHIR 495SKM 카라반(이하 '이 사건 카라반'이라 한다)에 관한 발주서를 제출하여 2012. 8. 22.경 이 사건 카라반 1대를 마산세관을 거쳐 인도받았다. 이 사건 카라반의 모델명인 "SAPHIR 495SKM"은 독일 Fendt사가 2012년경에 생산한 제품으로서 다른 연식이 존재하지 않는다.

나. 그 후 이 사건 카라반은 장기간 판매가 되지 않았고 차량의 외관에 찌그러짐 등일부 손상도 있는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죽리에 있는 피고의 직영 매장에 계속 전시되어 있었다.

다. 원고는 2014. 4. 19. 피고의 위 직영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카라반을 확인하였고, 이후 두 차례 더 위 매장 및 피고의 본사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인 B으로부터 다른 캠핑용 차량 10여 대와 이 사건

카라반의 사양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2014. 5. 1.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- 1) 모델명: SAPHIR 495SKM 알루미늄 휠 포함
- 2) 옵션: 45L 물통, 오토 무브, 어닝, 배터리, 솔라 충전, 샤워 꼭지, 가스통 2개3) 매매대금: 총 4,229만 원, 계약금 1,229만 원은 2014. 5. 7. 지급, 중도금 1,500만 원은 2014. 6. 7. 지급, 잔금 1,500만 원은 2014. 6. 30. 지급.
- 4) 동시이행: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카라반과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인도하여야 한다.
- 5)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카라반의 제품사항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하고, 원고는 피고가 고지한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,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후일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6) 해약금: 원고의 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라. 원고는 2014. 5. 7.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,129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, 을 제3, 4, 7, 8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영상, 증인 B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기초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액 3,100만 원(= 4,229만 원 - 기지급된 계약금 1,129만 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원고의 계약 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

1)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약금 조항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,129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인 1,229만 원 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, 그 차액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, 피고가 2014. 5. 1.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물론 약 2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 차액의 지급을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1,129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, 원고가 해약금 해제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2015. 8. 31.자 준비서면이 2015. 9. 7. 피고에게 송달된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카라반에 여러 옵션을 설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, 원고가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제4, 7, 8, 13, 14호증의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카라반에 설치한 옵션이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그 설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 착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항변은 이유 있고,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.

⑤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,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복, 판사 박 민, 판사 추진석